

구정질문 서면질문서

질문의원 : 박주선 의원

1. <정당 현수막 게재 기간 보장 관련> <도시디자인과>

- 「옥외광고물법」 제8조제8항을 통해 정당현수막을 적법하게 게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취지 자체가 <정당법>에 명시한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함임.
- 강서구청은 행정안전부와 법제처의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여, 무조건 연말까지 법 개정을 기다리자는 식의 불통의 행정을 이어가고 있음.
- 정당현수막 게재 관련해서 여야 정당 간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기존 관행이 문제가 있다면 정확한 진단과 해결 방법을 고민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함.
- 정당인들에게 정치적 홍보행위를 제한하는 것은 여야를 떠나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함.